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99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7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김기덕, 김광수, 이광성,
최정순, 김경영, 신정호, 김제리,
김동식, 이승미, 한기영 의원
(11명)

1. 제안 이유

상위법령인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개정 시 승인등을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. 「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」 별표 1 제1호자목에 대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전('19. 7. 2)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일관성, 제도 운영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-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('19. 7. 2)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함(안 부칙 제2조 신설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, 같은 조의 제목으로 “(시행일)”을 삽입하며, 같은 조 본문 중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 제 1호자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하며,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1호자목의 종전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호) 규정은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6984호)의 시행일 이전('19. 7. 2)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 칙 < 제6984호, 2019.1.3. > 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다만, 별표 1 제1호자목의 개정규정</u> <u>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</u> <u>시행한다.</u> <u><신 설></u></p>	<p>부 칙 < 제6984호, 2019.1.3. >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</u> <u>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유효기간) 별표 1 제1호자목</u> <u>의 종전(서울특별시조례 제5541</u> <u>호) 규정은 조례(서울특별시조례</u> <u>제6984호)의 시행일 이전(' 19. 7.</u> <u>2)에 승인등을 신청하는 사업까지</u> <u>효력을 가진다.</u></p>